

Oversea Manufacturer Registration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해석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Shanghai F-One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발표일자: 2021.08.31

Agenda

- 01 등록관리 규정 발전과정
- 02 등록관리 규정 수정배경 및 목적
- 03 신규 관리규정 및 기존내용과 비교
- 04 등록업체 리스트, 등록품목 수출 가능 국가(지역)
- 05 신규 관리규정 변경내용 정리
- 06 영향 분석 및 대응방법

1. 등록관리 규정 발전과정



2. 등록관리 규정 수정배경 및 목적

수정 배경

1. 중국시장 내 수입식품 무역량 급증;
2.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안전에 관한 요구 증가;
3. 신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발표(最嚴)

수정 목적

1. 식품안전 원천으로부터 관리;
2. 수입식품 공급업체 등록관리체계 최적화;
3. 수출국과의 책임 분담을 통한 관리체계 선진화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原국가질검총국 제145호령
4장, 23조
2012년 5월 1일부터 실시
제1장 : 총칙, 5조
제2장 : 등록조건과 절차, 7조
제3장 : 등록관리, 5조
제4장 : 부칙, 6조

해관총서 제248호령
4장, 28조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
제1장 : 총칙, 4조
제2장 : 등록조건과 절차, 14조
제3장 : 등록관리, 7조
제4장 : 부칙, 4조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 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실시조례 등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작성한다.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 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작성한다.

해석:관리규정의 법적 의거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2조 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 저장업체(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 업체"라고 함) 등록 및
감독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 업체"라고 함)의 등록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조항에 규정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식품첨가제, 식품
유관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석:등록관리 대상 명확화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고 함)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국가인증·인허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검위”라고 함)에서 해외생산업체등록 업무를 모집, 진행 하며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해관총서**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업무
총괄하여 관리한다.

해석:등록관리기관-해관총서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5조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품목 리스트》의 품목 관련 해외
생산업체는 등록 완성후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 업체는
해관총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해석: 모든 해외생산업체 등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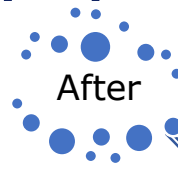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 소재 국가(지역)의 등록 관련 수의(獸醫)서비스 체계, 식물보호체계, 공중위생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동식물원료는 非전염병 발생 지역산이어야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동식물 전염병 위험이 있을 경우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에서 위험 해제 혹은 통제 가능하다는 증빙자료와 해당 과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의 유효 감독관리하에 있어야 하며 위생조건은 중국 법률 법규와 표준의 규정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After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

-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해관총서 동등 효력(等效性)의 평가,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 (2)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당국의 유효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방호체계를 세우고 소재 국가 (지역) 에서 합법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이루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 식품이 중국 유관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검토하고 정한 유관 검사, 검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해석: 등록조건 최적화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7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 혹은 기타 약정된 방식으로 국가인검위에 추천하되 본 규정 제6조에 규정된 증빙자료와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중문 혹은 영문 자료여야 한다.



After

제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과 **업체 신청등록**을 포함한다.

해관총서는 식품 원료의 유래, 제조·가공 공정, 기존 식품안전 수치, 소비 대상, 섭취방법 등 요소의 분석을 근거로 하고 국제관례와도 결함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 업체의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 또는 모 유형 식품의 리스크에 변화가 생긴 증거가 있을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식품의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 신청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유관 국가(지역)가 중국과 등록방식 및 신청서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쌍방 약정에 따라 진행한다.**

해석: 주관당국 추천 등록, 업체 자발 신청등록;
리스크 변화에 따라 조정, 약정에 따라 진행 가능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4조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품목 리스트》(이하 《리스트》라 함)의 작성, 조정은 국가인검위에서 책임지고 국가질감총국이 공지한다.

국가질감총국<질감총국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품목 리스트》 업데이트 관련 공고>(2015년 152호)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제품

최근 2년래, 해관에서 새로 검역검사 허가 받은 국가의 **벌꿀** 생산업체에 시험 등록관리를 시작했다.

《출입경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의 유관 요구에 근거하여 **쌀, 아마씨, 밀, 파프리카** 등 식물성식품도 해외생산, 가공, 저장업체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다.



After

제7조 다음과 같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와 육가공품, 케이싱, 수산물, 유(乳)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류,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特殊膳食 食品), 보건식품.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해석: 추천등록 품목유형 18개로 확대: 동물원성식품, 식물원성식품, 특수식품
업체신청 등록: 18개 유형 외 기타 식품; 방식: 자체+대리인 위탁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7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을 통하거나 또는 기타 약정된 방식으로 국가인검위에 추천하되 **본 규정 제6조에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와 하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중문 혹은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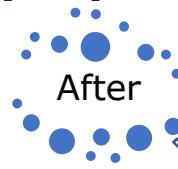
(1)(1)소재 국가(지역)의 동식물 전염병, 수의(獸醫)위생, 공중위생, 식물보호, 농약·동물약품잔류, 식품생산업체관리와 위생요구 등 방면의 법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기관 설치와 인원상황 및 법규 실행 관련 서면 자료;

(2)(2)등록 신청한 해외생산업체 리스트;

(3)(3)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에서 추천업체들의 검역, 위생관리 실제상황 관한 평가자료;

(4)(4)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중국 법률, 법규에 부합된다는 자료;

(5)(5)생산업체 등록신청서, 필요시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제조공정 설명 등



After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2)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3)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1)(4)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

(5)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그리고 제조공정 설명 등.

해석: 신청자료 최적화, 주관당국과 업체 분담 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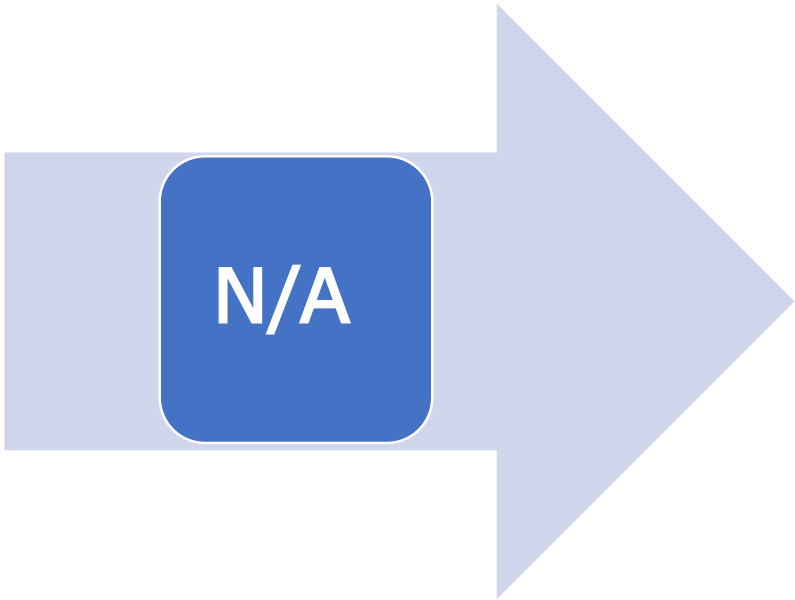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After



N/A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업체 등록 신청서;

(2)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 소재 국가
(지역) 주관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3)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聲明) ;

해석: 업체 신청자료 간소화, 업체 책임 강화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N/A

제10조 업체 등록 신청서 내용은 업체명, 소재 국가(지역), 제조 장소 주소, 대표자, 연락인,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정보를 포함한다.

해석: 신규 조례, 10가지 내용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After

제7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을 통하거나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으로 국가인검위에 추천하되 본 규정 제6조에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와 하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중문 혹은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등록 신청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유관 국가(지역)가 중국과 등록방식 및 신청서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쌍방 약정에 따라 진행한다.**

해석: 신청자료 준비-중문 혹은 영문 혹은 **약정**대로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N/A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합법성을 담당해야 한다.

해석: 신규 조례, **신청자 분담** 명확히 정함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8조 국가인검위는 해당 전문인원 혹은 지정 기관을 모집·파견하여 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 혹은 기타 규정방식으로 제출한 **서류검사** 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검사** 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이상 인원으로 구성된다.

평가 심사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국가 인검위의 시험에 합격되어야 한다.



After

제13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서류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여러 **조합**으로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 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이상 평가·심사인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상 평가·심사 업무의 개시를 협조해야 한다.

해석: 다양한 검사방법 시행 가능, 서류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심사 시 신청자의 책임 명확히 정함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9조 평가 심사팀은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품목 리스트》
내의 각 제품 유형 관련 심사절차와 요구에 따라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인검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인검위는 작업절차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요구에 부합되는 업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서면으로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통보하고; 등록 불가인 업체는 서면으로 해외
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통보하고 등록 불가의
이유까지 설명한다.
국가인검위는 정기적으로 등록 성공한 업체리스트를 공고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After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을 근거로
요구에 부합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등록을 허가하고 중국등록번호 (在華注冊
編號)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는 등록이 불가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석: 등록 결과 **서면 통보**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12조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해외생산
업체는 對중국 수출식품 외포장에 진실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등록번호를 도용,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After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해석: **내·외 포장에 등록번호 기재**는 본 관리규정의 핵심 실시 내용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10조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해외생산업체에서 등록 연장 필요하면 유효기간 만기 1년전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기타 약정된 방식으로 국가인검위에 등록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지나고 연장 未신청 업체는 국가 인검위에서 그 등록번호를 말소하고 대외 공개한다.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해석: **유효기간 연장**, 중국 현지업체 감독관리와 연결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9조 평가 심사팀은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품목 리스트》의 각 제품 유형 관련 심사절차와 요구에 따라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인검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인검위는 작업절차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요구에 부합되는 업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서면으로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통보하고; 등록 불가인 업체는 서면으로 해외 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통보하고 등록 불가의 이유까지 설명한다.

국가인검위는 정기적으로 등록 성공한 업체 리스트를 공고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제17조 **해관총서**에서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리스트를 함께 대외 공개한다.

해석: 해관총서에서 결과 공개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13조 국가인검위는 법규에 따라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품목 리스트》내의 식품
해외생산업체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필요 시, 관할 전문가 또는 지정 기관을 모집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제18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요구 지속적 부합 여부
상황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이상 평가·심사인원 으로
구성된다.**

해석: 등록후 감독-**재** 검사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11조 등록번호를 받은 해외생산업체의 등록항목에 정보 변경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 혹은 기타 약정방식 으로 즉시 국가인검위에 통보하고 국가인검위는 구체적인 변경상황에 따라 해당 처리를 취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정보 변경 시,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 도표

(2) 정보 변경 유관 증명 서류

해관총서의 평가 결과가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을 허가한다.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 국가 (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재등록 신청해야 하고 기존 중국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

해석: 등록후 감독-정보 변경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10조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해외생산업체에서 등록 연장 필요하면 유효기간 만기 1년전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기타 규정한 방식으로 국가인검위에 등록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지난 연장 신청 未진행 업체는 국가 인검위에서 그 등록번호를 말소하고 대외 공개한다.



After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연장 시, 등록 유효기간 **만기 전 3~6개월** 내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연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 연장 신청서;**
- (2) **등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다고 승낙하는 성명;**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고 **등록 유효기간 5년 연장한다.**

해석: 등록후 감독-연장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10조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해외생산업체에서 등록 연장 필요하면 유효기간 만기 1년전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기타 규정한 방식으로 국가인검위에 등록 연장 신청을 제출한다.

유효기간 지난 연장 신청 **未진행** 업체는 국가 인검위에서 그 등록번호를 말소하고 대외 공개한다.



After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며 대외 공개한다.

-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
- (3) 본 규정의 제5조 제(2)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2)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당국의 유효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해석: 등록후 감독-**말소**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After

N/A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업체에 유효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이미 등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에 부합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여 등록 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하고 유관 업체의 對 중국 식품 수출을 중단한다.

해외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 시, 주동적으로 중국 수출을 중단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되도록 시정해야 한다.

해석: 등록후 감독 - **시정** - 자발 발견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14조 재 심사하여 등록허가 받은 해외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요구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국가인검위는 그 등록자격을 잠시 중단하고 국가질검 총국에 해당 제품 잠시 수입 중단을 보고한다. 동시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에 통보하고 대외 공고한다.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당국은 시정 필요한 생산업체가 규정 기한내에 시정을 완료하도록 감독해야 하고 국가인검위에 서면으로 시정보고서와 중국 법규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검위에서 검토 합격되면 對중국 수출을 회복한다.



제23조 해관총서에서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 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 시, 규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 기간 동안 유관 업체의 식품 수입을 잠시 중단 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 등록한 업체가 잠시 수입 중단되는 경우, 주관 당국은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는것을 감독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 보고서와 등록 요구에 부합하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가 잠시 수입 중단되는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 보고서와 등록 요구에 부합된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 시정 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합격시, 유관 업체의 식품 수입을 회복한다.

해석: 등록후 감독 - **시정** - 해관총서 발견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국가인검위에서 그 등록을 폐지하고 국가질감총국에 보고한다, 동시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통보하고 대외 공고한다.

- (1)(1)해외생산업체 자체의 원인으로 수입식품 중대 식품 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 (2)(2)對중국 수출 식품이 입경 검사검역 중 불합격 상황이 발견되었고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 (3)(3)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수출 제품의 식품 안전 위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4)(4)시정 후에도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5)(5)허위 서류 제출, 유관 상황 기만할 경우;
- (6)(6)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매, 고쳐쓸 경우.



After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서 그 등록을 폐지하고 대외 공고한다.

(1) 업체 자체의 원인으로 수입식품 중대 식품 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2) 對중국 수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중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3)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對중국 수출 식품이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하다는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1)(4) 시정 후에도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5) 허위 서류 제출, 유관 상황을 숨기는 경우;

(6) 해관총서의 재심사 개시와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7)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도용**하는 경우.

해석: 등록후 감독 - 폐지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18조 국제기관이나 對중국 식품 수출하는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생을 통보, 또는 유관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과정에서 전염병, 공중 위생사건 등 엄중한 문제 발견 시, 국가질검총국은 해당 국가(지역)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잠시 중단을 통보하고 이 기간에 국가인검위는 해당 국가(지역) 유관 식품 업체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국제기구나 對중국 식품 수출하는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생을 통보, 또는 유관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과정에서 전염병, 공중 위생사건 등 엄중한 문제 발견 시,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 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잠시 중단하고 이 기간에 해당 국가(지역) 유관 식품 업체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해석: 전염병 발생기간 수입 잠시 정지, 등록 불접수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Before



After

제21조 본 규정 중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에서 해당 식품 안전
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지정 수권기관, 및 업계단체
등을 말한다.

제26조 본 규정 중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에서 **식품생산 업체 안전 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를 말한다.

해석: 주관당국 범위 축소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22조 본 규정은
국가질감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7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3. 신규 규정 내용 및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



제23조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原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02년 3월 14일에 공고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2012년 3월 22일 原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令 제145호 에서 공고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 令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4. 등록업체 리스트, 등록품목 수출 가능 국가(지역)

기존 등록업체 리스트 검색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2811812/index.html>

2021年7月28日 星期三

海关电邮 · 下载中心 · 用户空间 · 无障碍 · 繁體版 · English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进出口食品安全局

请输入搜索关键字

热词：减免税 | 海关管理 | 货运监管 | 行政监管

首页

党群信息

工作动态

政策法规

信息服务

办事服务

您的位置：首页 > 信息服务 > 业务信息 >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信息

业务信息

进出口肉类监管重要信息

进出口水产品监管重要信息

进出口植源性产品监管重要信息

进出口乳品监管重要信息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信息

> 进口乳品境外生产企业注...

> 进口肉类境外生产企业注...

> 进口水产品境外生产企业...

> 进口燕窝境外生产企业注...

> 进口蜂蜜境外生产企业注...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信息

- 获得注册登记的卢旺达干辣椒企业名单 (2021年7月21日更新)
- 获得注册登记的哈萨克斯坦小麦粉企业名单 (2021年7月1日更新)
- 获得注册登记的阿根廷干豌豆企业名单 (2021年7月公布)
- 获得注册登记的巴基斯坦大米企业名单 (2021年7月1日更新)
- 获得注册登记的乌兹别克斯坦绿豆企业名单 (2021年7月1日更新)
- 批准注册登记的秘鲁藜麦企业名单 (2021年7月1日更新)
- 获得注册的老挝输华鲜菜豆企业名单 (2021年4月21日公布)
- 获得注册的老挝输华鲜毛豆企业名单 (2021年4月21日公布)
- 获得注册登记的俄罗斯亚麻籽企业名单 (2021年4月15日更新)
- 获得注册登记的俄罗斯燕麦企业名单 (2021年4月15日更新)

2021-07-21

2021-07-01

2021-07-01

2021-07-01

2021-07-01

2021-07-01

2021-04-21

2021-04-21

2021-04-15

2021-04-15

<

1

2

3

4

>

共 4 页，到第

1

确定

4. 등록업체 리스트, 등록품목 수출 가능 국가(지역)

기존 등록 필요 품목 對중국 수출 가능 국가(지역) 검색 <http://43.248.49.223/>

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

首页	肉类	水产品	乳制品	中药材	燕窝	肠衣	植物源性食品	蜂产品
----	----	-----	-----	-----	----	----	--------	-----

系统简介

为严格落实《食品安全法》等有关规定，进一步规范对境外输华国家或地区食品安全体系评估和审查，便于国内外监管部门、经营主体和广大消费者了解相关信息，更好地服务进出口贸易健康发展，海关总署进出口食品安全局开发了“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信息系统”（以下简称“目录”）。

目前，本目录包括：肉类（鹿产品、马产品、牛产品、禽产品、羊产品、猪产品）（内脏和副产品除外）、乳制品、水产品、燕窝、肠衣、植物源性食品、中药材、蜂产品等8大类产品信息，海关总署将根据评估和审查结果进行动态调整。进口目录以外的食品需符合我国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要求。为便于用户使用，系统提供了进口食品目录查询、产品名称查询、国家或地区查询等多种查询方式。

注1：体系评估：是指某一类（种）食品首次向中国出口前，海关总署对向中国申请出口该类食品的国家（地区）食品安全管理体系开展的评估活动。

注2：回顾性审查：是指向我国境内出口食品的国家（地区）通过体系评估已获得向中国出口的资格或虽未经过体系评估但与中国已有相关产品的传统贸易，海关总署经风险评估后决定对该国家（地区）食品安全管理体系的持续有效性实施的审查活动。与中国已有贸易和已获准向中国出口的食品均属于回顾性审查的相关食品范围。

进口食品名单



肉类名单

肉类查询



水产品名单

水产品查询



乳制品名单

乳制品查询



中药材名单

中药材查询



燕窝名单

燕窝查询



肠衣名单

肠衣查询



植物源性食品名单

植物源性食品查询



蜂产品名单

蜂产品查询

5.신규 관리규정 변경내용 정리

변경 1: 등록 제품유형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필요 품목 기존의 육류, 수산물,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벌꿀제품, 케이싱, 유제품, 식물원성제품인 쌀, 밀 등 품목 → **모든 품목**
---제2조 참조

변경 2: 등록 방식

주관당국 추천등록 → **주관당국 추천등록 , 업체 신청등록**
---제7조, 제9조 참조

변경 3: 신청자료

신청자료 최적화
---제8조, 제9조 참조

5.신규 관리규정 변경내용 정리

변경 4: 평가 검사 방식

서면 검사,현장 검사 → 서면 검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및 그 조합 방식
---제13조

변경 5: 포장 표시 요구

등록번호 외포장에 표시 필요 → **내·외 포장**에 표시 필요
---제15조

변경 6: 등록 유효기간

유효기간 4년 → **5년**
---제16조

5.신규 관리규정 변경내용 정리

변경 7: 변경/연장 제출자료 및 연장 신청시간

등록 변경과 연장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 → 변경 및 연장 필수자료까지 명확히 요구

---제19조, 제20조

등록 만기전 1년전 신청 → 만기전 **3~6개월전** 신청

---제20조

변경 8: 해외생산업체 주관당국 범위 축소

해외생산업체 소재국가(지역) 식품 안전·위생 담당 정부기관, 지정수권기관 및 업체단체

→ 해외생산업체 소재국가(지역) 식품 생산업체 안전·위생 감독관리 **담당 정부기관**

---제26조

6. 영향 분석 및 대응방법

- ✓ 육류 및 육류제품
- ✓ 케이싱
- ✓ 수산물
- ✓ 유제품
- ✓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 ✓ 벌꿀제품
- ✓ 쌀
- ✓ 귀리 등 식물성제품
- ✓ 영유아조제분유
(특수선식식품)

A. 왼쪽 품목 기존 등록 완료 생산업체

- 잠시 영향 없음, 생산업체 자료 변경으로 인한 재 신청이나 등록만기로 인한 연장신청 주의 필요;
- 특수선식식품 외의 품목들 내·외포장 등록번호 표시에 주의 필요, 포장에 표시안됐으면 스티커작업으로 해결;
- “**특수선식식품은 스티커 작업 불가**”에 특별 주의 필요, 등록번호 未표시 시 포장 재 인쇄 필요;
- 특수선식식품 제품 판매량과 수출시간 감안하여 포장수량 준비 필요.

B. 왼쪽 품목 未등록 생산업체

- 주관당국의 추천서, 생산업체 심사보고서
- 내·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시
특수선식식품 스티커 부착 불가, 내·외포장 등록번호 표시 필요

6. 영향 분석 및 대응방법

기타 주관 당국 추천 등록 필요 품목

- 수출 전 등록절차 진행 등 필수 사전 조치 필요, 제품 매진 방지;
- 특수식품(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포함) 외 품목 내·외포장에 등록번호 표시 필요, 포장에 未표시 시 스티커 부착;
- “특수선식식품(영유아조제분유 제외)과 보건식품, 최소판매포장에 중문라벨 인쇄 필요, 내·외포장에 등록번호 인쇄 표시 필요;
- 특수식품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포함) 제품 판매량과 수출시간 감안하여 포장수량 준비 필요.

6. 영향 분석 및 대응방법

기타 품목

(예: 음료, 과자,
빵, 캔디, 초콜렛
등 일반식품)

- 생산업체 자체 신청, 수출전 사전 준비, 가능한 일찍 등록 신청 권장;
- 내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시, 未 표시 시 스티커 부착.



THANKS

위챗 공식 계정

Email: f-one1@fonesupplychain.com

Tel: +86 21 6199 2630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Shanghai F-One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